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7.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1월 27일, 남인순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1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3. 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 3. 12.)

상정, 축조심사

제434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 4. 2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4회국회(임시회 · 폐회중) 제1차 전체회의(2026. 4. 29.)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남인순의원)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재원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운용되어야 함. 특히 지속가능사회로의 전환

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는 기업의 재무성과와 시장의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요 국가와 기관들은 이를 투자 원칙에 적극 반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운용 과정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그 적용이 임의에 머무르고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고려 대상인 투자 방식을 확대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등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강화하여 장기적 수익성과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함께 확보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현행법 제102조제4항은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관리·운용할 때 ESG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인데, 개정안은 이를 강행규정으로 하여 ESG 투자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그런데, 보험료율을 인상한 최근의 모수 조정에도 불구하고 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과 현행법에서 ESG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 목적은 제102조제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일부 투자방법에 대하여 ESG를 의무적

으로 고려하게 하는 것이 국민연금 급여 지출을 위한 책임준비금인 기금 운용의 수익성을 높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미칠 영향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한편 개정안은 현행법 제10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증권의 매매·대여’ 외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도 ESG 투자를 적용하려는 것인데, 수시입출식예금(Money Market Deposit Account; MMDA) 등 현금성 자산은 급여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신속하게 유동화될 수 있는 환금성이 중요하다는 점과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는 현행법 제1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국채를 매입하거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등의 간접투자 방식에 의하게 되는 점, 금융투자상품지수(예: KOSPI200)는 투자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과 제3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4. 11. 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및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투자방법에서 제외한 심사경과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현행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매년 마련하여야 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ESG의 고려 기준·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 어떻게 ESG를 고려하여 적용할지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기금의 책임 투자 원칙을 공고히 하고, 그 성과를 평가할 기준을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 ESG를 고려하는 기준·방법 등이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포함·공개되면 개별 기업이 그 기준·방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ESG 경영을 추구할 유인을 제공하면서, ‘기금의 책임투자’와 ‘기업의 책임경영’ 간의 선순환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기금의 책임투자 관련 ‘9대 원칙’과 증권사의 ESG 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61대 지표’ 외에 ‘각 평가지표별 수치화 방법과 고려 비중’이나 이를 활용하는 ‘고려 전략’ 등까지가 모두 공개될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기금의 투자전략을 유추하거나 추종하는 투기적 수요가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포함하려는 사항은 기금의 관리·운용이 국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보안 유지의 필요성 등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의 최대 증대를 최우선 가치로 고려하며 관리·운용되어야 하므로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의 ESG 투자를 의무화하는 강행규정으로의 개정은 신중한 필요가 있음.
- ESG 투자와 기금투자수익률이 반드시 상충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시 ESG를 고려함으로써 수익성에 미칠 장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ESG 투자의 원칙이 법률에 규정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도 ESG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각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